

신구조문 대비표

약관명: 해외 송금 약관

변경 전		변경 후		비 고
제1조	홍콩상하이은행(이하 ‘은행’)은 신청인으로부터 별도 요청이 없는 한 <u>지급지시/송금수표를 은행의 지점 또는 거래은행(이하 ‘환거래은행’)</u> 앞으로 <u>지시/발행할 수 있습니다.</u>	제1조	홍콩상하이은행(이하 ‘은행’)은 신청인으로부터 별도 요청이 없는 한 <u>지급지시를</u> 은행의 지점 또는 거래은행(이하 ‘환거래은행’) 앞으로 <u>지시할 수</u> 있습니다.	- 송금수표발행을 중단함에 따라 송금수표 관련 문구를 삭제함
제2조	은행은 환거래 은행에 <u>지급지시/송금수표에</u> 관련된 지시 등을 함에 있어 통상어, 부호, 암호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	제2조	은행은 환거래 은행에 <u>지급지시에</u> 관련된 지시 등을 함에 있어 통상어, 부호, 암호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	- 송금수표발행을 중단함에 따라 송금수표 관련 문구를 삭제함
제3조	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3. <u>지급지시/송금수표 발행 통지서의 전달 중에</u> 발생하는 분실, 착오, 훼손, 지연, 불착, 그릇된 전달 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	제3조	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3. <u>지급지시 통지서의 전달 중에</u> 발생하는 분실, 착오, 훼손, 지연, 불착, 그릇된 전달 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	- 송금수표발행을 중단함에 따라 송금수표 관련 문구를 삭제함
제4조	신청인의 송금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은행은 외국환관리 관계법령, 규정 및 은행의 내규 등에 따라 <u>송금수표의 원본을 반환 받거나</u> 지급지시에 의한 송금의 경우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송금취소확인서를 받은 후,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실제 반환 받은 금액에서 은행 및 환거래은행의 모든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 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.	제4조	신청인의 송금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은행은 외국환관리 관계법령, 규정 및 은행의 내규 등에 따라 지급지시에 의한 송금의 경우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송금취소확인서를 받은 후,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실제 반환 받은 금액에서 은행 및 환거래은행의 모든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 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.	- 송금수표발행을 중단함에 따라 송금수표 관련 문구를 삭제함
제5조	송금수표의 지급자금이 지급은행에 제공된 경우 은행은 송금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은 신청인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지급은행에 송금수표 액면금액의 지급을 유보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.	제5조	(삭제)	- 송금수표발행을 중단함에 따라 송금수표 해당 조항을 삭제함